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불일치하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2022. 9. 7. 자 2022마5372 결정

【판시사항】

-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결정요지】

-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하지만(상법 제362조), 예외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이하 '임시총회소집청구서'라 한다)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u>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 이때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이사회에 먼저 제출한 청구서와 서로 맞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재판에서 그 청구서에 기재된 소집의 이유에 맞추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불일치 등에 관하여 석명하거나 지적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회의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u>
- 한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조),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대표이사직도 상실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수주주로 하여금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도록 할필요가 있다.

【평석】

- 정관에서 총회 결의사항으로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이를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삼아 상법 제366조에서 정한 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임시총회소집청구서상의 회 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의 해임 및 선임'**으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하였다.
- 그러나 대법원은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의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소집 이유에는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소수주주의 의사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그 결과 당연히 대표이사직 해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법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법원은 단순히 석명권을 가지는 것을 넘어 석명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문정해 교수님 추천 판례입니다